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기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금의 지급 대상 변경(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 기준 정비(안 제2조)
- 장학생의 선발 기준 마련(안 제4조)
- 장학금의 금액(안 제6조)
- 장학금의 지급 방법(안 제7조)
-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 정비(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

○ 검토 결과,

-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혜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자격 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차액 지급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는 장학금 지급과 공정성 및 통·리장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격 기준과 일부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학금 대상자 확정시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장학금 중복·부정 수령에 대한 환수 규정 신설 등 조례 보완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